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4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당초 사업시행자의 기금 분할납부를 가정해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일시 납부가 발생하여 기금 수입이 변동됨
-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금 납부 사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계획 변경사항]

가.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천만원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107억 2천만원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나. 상반기 기금 납부로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세외수입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경상적세외수입	-	740,183	740,183	100%
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임시적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기타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지출계획 변경사항]

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단위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암사역사공원 조성’ 229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에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93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공공시설등 설치	-	32,320,000	32,320,00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22,950,000	22,950,000	100%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000	22,95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22,950,000	22,950,000	100%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9,370,000	9,370,000	100%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000	9,37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9,370,000	9,370,000	100%
재무활동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보전지출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여유자금 예치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예치금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박미라(☎ 2133-6956)